

〈87. 9월호 30 p에서 계속〉

3. 자조금제도의 운영

1) 운영주체 (전담기구)의 지정과 구성

자조금제도가 의거실시되려면 그 운영을 통괄할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당해 품목의 자조금에 관한 일절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조금의 운영주체인 것이다.

이 기구의 성격, 조직 및 기구에 대한 일반사항은 법에 명시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품목별 산업의 형편과 생산자의 조직 및 활동의 정도에 알맞게 적절한 주체를 지정하면 된다.

자조금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기구는 별도로 신설하여 자조금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존 품목별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자조금기능을 대항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거의가 연관 생산자단체에 자조금 업무도 확연하게 구별하여 수행한다.

한국의 현실로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인 기존 사단법인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이들 각종 품목협회에 추가적으로 자조금 운영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그 조직이 산만하고

기능이 부실한 점도 없지 않으나 앞으로 자조금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조금 운영을 맡긴다면, 명실상부한 생산자의 이익집단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는 이들 본래의 생산자협회가 활동비의 조달방법으로 자조금제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협회에 자조금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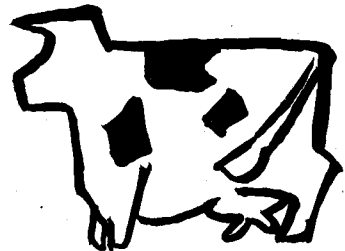
그러나 협동조합을 흔히 생산자단체라고 부른다 해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조금을 운영케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은 타당치가 않다. 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조합조직을 필요로 하는 일부 생산자들의 특수경제단체인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 생산자도 자조금제도에 모두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조금의 전담조직은 의사결정기구와 업무집행기구로 구성하게 된다. 전자는 자조금의 주인인 생산자 대표와 법이 정하는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해당품목의 자조활동에 대한 일절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고, 후자는 피고려인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자조금기구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조금의 성격규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많은 연구,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분야다.

2) 주요사업내용

자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매우 가변적이나 모든 품목에 통용될 수 있다



자조금은 산업의 공금이므로 전담기구의 운영결과는 참고생산자와,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즉 소정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조금의 수급과 사용내력, 효과, 활동상의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다.

고 생각되는 주요항목을 요약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1) 조사, 연구 및 교육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
- 생산, 가공, 유통능력의 향상과 소비의 합리화를위한 조사, 연구
- 품질의 향상, 표준 및 규격화와 새로운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 해당 품목의 영양, 품질, 위생, 가격 및 취급에 대한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교육
- 자조금제도와 업무내용에 대한 생산자와의 의사소통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생산자 교육

(2) 상품화, 유통 및 소비촉진

- 가공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활동
- 유통개선 및 효율향상에 관한 대책 강구
- 상품화와 생산단계의 기능연계 촉진
- 소비확대를 위한 종합활동 전개
-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홍보 및 소비자 접근

(3) 산업발전

- 산업의 장단기 발전대책 강구
- 기술,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산업구조 개선
- 연관 산업과의 계열화에 의한 균형발전 모색
- 국내의 시장개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산업여건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 및 수행 지원



(4) 운영결과의 공개

자조금은 산업의 공금이므로 전담기구의 운영결과는 참고생산자와,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즉 소정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조금의 수급과 사용내력, 효과, 활동상의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 업무추진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 외부 또는 정부감사를 받아 자조금제도의 정당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

자조금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제도이며 이것이 생산자의 발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축산업도 이제는 산업의 주인 스스로가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구, 생존,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조금제도는 미래를 지향하고 현실에 입각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어떠한 형태로든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이익집단의 주도하에 입법, 행정, 학술연구, 업계 및 여론의 협조를 얻어 추진되어



야 할 자조금의 제도화 및 시행과정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제약요건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두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1) 제도화과정

첫째, 산업, 정부, 입법관계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자조금을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산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연관산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협조자의 올바른 인식없이는 자조금제도가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자조금 부과는 생산비 또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문이다. 사실은 0.5% 미만의 감소한 부과이므로 그 배경이 무시할 정도이고 축산물과 생산자재 가격의 등락추세로 보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셋째, 각종 기금과 단체의 통괄합이 권유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이다. 이점도 자조금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기존 기금이나 단체의 경우와는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자조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충당하여 축협이 관리하면 간편할 것이라는 속단이다. 앞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자조금의 취지와 운영은 축진기금이나 축협의 영역과는 결부시키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섯째, 축산업계에 과연 자조금의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하는 양의이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나 앞으로 뜻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 “자조금제도추진위원회”를 조

직, 합심해 나간다면 축산업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시행과정

첫째, 자조금 부과 거점이 문제이다. 생산물에 부과하는 경우 우유는 유가공장, 우육, 돈육은 도축장, 계장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유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부과에 아직도 문제가 있으며 계란은 질서있는 유통체계가 없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산자재에 부과하는 경우는 배합사료, 병아리 등의 생산, 판매체계가 그런대로 정립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징수의무자의 협조정도도 문제가 된다. 물론 자조금이 징수, 전금, 기록, 보고 등은 행정명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될 것이나 당사자인 가공 또는 유통업자가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조금 시행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다.

셋째, 자조금 전담기구가 과연 능률적으로 운영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조금제도와 같은 민주적 이익집단의 공동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풍토에서 생산자 대표에 의한 정책결정과 피고용인에 의한 운영이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넷째, 자조금제도 성과에 대한 생산자의 반응이 문제이다. 개별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조금을 부담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자조금에 의한 활동결과가 자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감지하기가 어려운 데서 오는 불신 또는 의혹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정책변화에 따라 자조금제도 운영이 유동적일 우려가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가 바뀌어 자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한 비협조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자조금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 더욱 크게 대두될 수 있다.